

202.70호

행 정 명 령

**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
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**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 명령(Executive Order)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따라서 오늘 저 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, 조례의 특정 조항, 명령,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 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법률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와, 행정 명령 202.36호, 202.37호, 202.46호, 202.47호, 202.54호, 202.58호, 202.59호에 포함된 후속 지침으로 대체되지 않은 모든 지침을 행정명령 202.65호에서 지속되고 포함된 바와 같이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까지 30일간 더 지속합니다.

또한, 행정부법 2-B조의 제29-a항에 의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재난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까지 발행합니다.

- 모든 상업적인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또는 모든 상업적 모기지의 해당 모기지 미납으로 담보권 행사와 관련된 202.28호에 포함된 지침을 수정한 행정 명령 202.64호에 포함된 지침을 2021년 1월 1일 금요일까지 지속합니다.
- 행정 명령 202.3에 포함된 지침이 수정된 바와 같이 뉴욕시 지역과 카운티의 영화관 감염률이 14일 평균 기간 동안 2% 이상이었으며, 위험 지역이 있는 카운티의 영화관은 계속해서 폐쇄됨을 고려하여 보건부 지침을 준수함에 따라 폐쇄되었던 영화관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영화관당 최대 수용 인원의 25%, 즉 영화관당 최대 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.

2020년 10월 20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

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

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